

의안번호	2207888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3. 17.
추 계 번호	25B0644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제13조(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 조제목을 “<u>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u>”에서 “<u>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u>”로 변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u>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u>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u>을 위하여 <u>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u>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함(제1항)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 농업인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외소득 활동 우선 지원 대상에 기존 여성농업인 외에 청년농업인을 추가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외소득 활동 우선 지원 대상에 청년농업인 추가(안 제13조)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외소득 활동 촉진 및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의 우선 지원 대상에 현행 여성농업인 외에 청년농업인을 추가하는 것임
 - 다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른 여성기업에 우선하여 농촌 여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에 비해 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농업인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농외소득 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 기반만으로 농가소득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2차(제조·가공), 3차(체험·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 및 농외소득 제고를 위해 농촌휴양서비스산업 육성,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의 농촌경제활성화지원 사업¹⁾을 추진 중임

[표 1] 농촌경제활성화지원 사업 예산 편성내역(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편성내역	금액
농촌융복합 혁신 거점 조성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및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4,960), 인증경영체(소프트웨어) 지원(4,007)	8,967
농촌휴양서비스 산업 육성	콘텐츠 개발·확산 지원(2,305),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2,052), 농촌 휴양·서비스산업 육성(6,038), 농촌 관계인구형성 지원(390), 농촌 휴양·서비스 참여기반 확충(750)	11,535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시범)	농촌산업 혁신지원(300), 농촌 혁신아이디어 콘테스트(225), 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450)	97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 발채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30-300

-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 농업인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등의 사업이 시행 중임

[표 2] 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금액	대상 (여성, 청년 농업인 여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창업과 초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113,662	여성, 청년 농업인 모두 포함
후계농업경영 인육성사업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 구축 및 운영자금 지원	87,143 (이차보전) (융자 600,000)	여성, 청년 농업인 모두 포함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지원내용: 전문성이 부족한 농업인 대상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주체: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지원대상: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중인 농업인(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420 (국비 70%, 자부담 30%)	여성, 청년 농업인 모두 포함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 (2040세대 역량향상프로 그램)	품목별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 및 선도농 양성·활용 교육을 통해 성장단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지원	4,032	여성, 청년 농업인 모두 포함
영농아카데미 (농업마이스터대학)	실습기술경영교육을 제공하는 마이스터 과정(2년, 4학기) 및 청년농CEO 과정(1년, 2학기) 운영 지원	5,125	여성, 청년 농업인 모두 포함
귀농귀촌활성 화지원	(사업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실습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기간)'13~계속 (지원대상)귀농귀촌희망자등 (지원조건)민간경상보조(국고70~100%) (시행주체)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7,232	여성, 청년 농업인 모두 포함
농촌경제활성 화지원(인증 경영체 성장지원)	농촌융복합산업(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 체험, 관광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전문 컨설팅, 판로 개척(전용 판매관 입점 등) 등을 지원	3,427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여성 농업인, 청년농 업인 포함)
농업자금이자 보전 (농촌융복합 산업자금)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운영(최대 3억원) 및 시설리모델링 자금(최대 20억원) 저리(고정 2.0% 또는 변동) 융자 지원(이차보전)	15,000 (융자 한도 총액)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여성 농업인, 청년농 업인 포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촉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